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NEWSLETTER

식품의약품안전처

NO.7

2020.11.30(월)

MAIN ISSUE

식약처가 전하는
CODEX NEWSLETTER 주요내용



ISSUE 01

CODEX 회의소식



ISSU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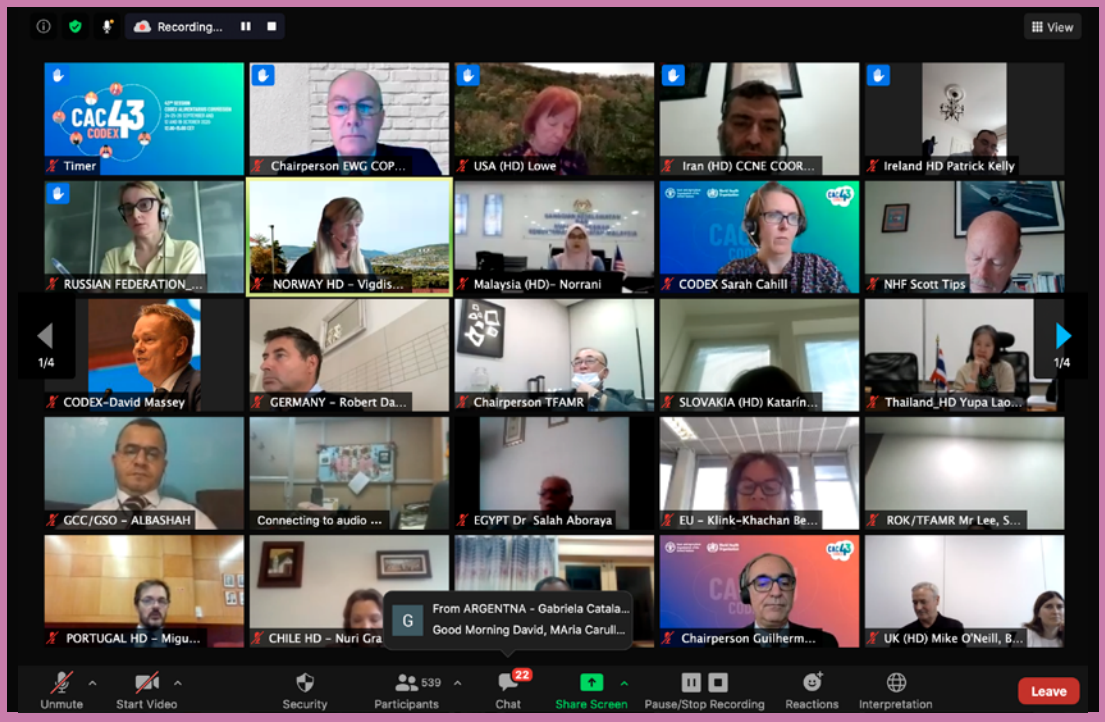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CODEX ALIMENTARIUS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8개국과 236개의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있는 정부간 기구로
식품안전 및 교역관련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마련합니다.
특히 마련된 국제기준은 국가간 식품교역에서 유일한 기준으로 무역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각 국가의 식품기준 설정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FTA의 확대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10회 이상 CODEX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식품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식품을 세계로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

ISSUE 0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CODEX 세션 개최



CODEX 회의소식

식약처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 대회(주제: 신종 식인성 병원체와 식품안전)에서 'CODEX 최신동향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CODEX 세션은 식약처의 CODEX 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CODEX 관련 전문가 육성 및 현장에서의 소통과 협력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세션의 주제는 'CODEX 동향 및 향후 운영방향', 'CODEX 잔류농약분과에서의 의제 대응 및 의견 제출 작업 현황', 'CODEX 항생제내성분과 의장국으로써 국내 항생제내성 감소를 위한 연구동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그동안 국내와 국제 식품기준의 조화에 초점에 맞춰 CODEX 회의에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신규 국제기준 의제를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이 국제기준으로 설정되는 작업을 선도할 계획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2021년 CODEX 회의 일정과 의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식품의 국제식품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도 더 증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CODEX 업무 대상자를 위한 'CODEX 이해과정 교육' 실시

식약처는 CODEX 업무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19일에 'CODEX 이해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식약처뿐만 아니라 CODEX 업무와 연관 있는 관련부처(농림부, 해수부) 업무담당자와 식품업계 종사자를 포함하여 총 45명이 교육대상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세계 규격 개발 과정을 포함한 'CODEX 규격 개발 실무' 주제의 강의와 'WTO SPS/TBT협정과 CODEX 표준'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또한, CODEX 관련 실무와 전문성 있는 강의를 위해, 국제무대에서의 전문적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 영어' 강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기준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식품산업 발전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CODEX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연구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SSUE 02

미국

*출처

①https://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launches-voluntary-pilot-program-evaluate-third-party-food-safety-standards-meeting-another
②www.fda.gov/food/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fsma-final-rule-preventive-controls-human-food
③www.fda.gov/food/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fsma-final-rule-produce-safety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식품의약국(FDA), 제3자 식품안전기준 평가를 위한 자발적 시범프로그램 실시 (10월 23일)

FDA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식품의 예방관리 및 농산물 안전 규칙에서 제3자 식품안전기준 평가를 위한 시범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FDA 규정이 아닌 제3자 검사기준과 식품안전요건이 조화를 이루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식품의 예방관리 규칙은 식품시설에서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위해요소와 위해성 기반 예방관리 분석을 포함하는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 농산물 안전 규칙은 인간이 섭취하기 위해 재배한 과일과 채소의 안전한 재배, 수확, 포장 및 저장에 대한 최소 기준을 확립하는 것

시범프로그램은 FDA와 식품 업계 모두가 이러한 제3자 검사기준이 FDA 규정과 일치하는지 자발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스마트 식품안전 새 시대 청사진'과 목표가 일치합니다.

이 '청사진'은 FDA 규제 활동을 위한 사전예방에 검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3자 검사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FDA는 식품의 예방관리 및/또는 농산물안전 규칙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최대 5가지의 제3자 식품안전 기준을 선정하여 평가할 계획이며, 이 시범사업은 1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입니다.

FDA가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평가를 내리기 위해 미국 연방 관보에 발표된 후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FDA로부터 시범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피드백을 요청 받을 것입니다.

EU

EU, 식품에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 최대 잔류 허용 기준(MRL) 개정 (10월 27일)

유럽의회는 (EU)No.2020/1566 규정을 통해 식품에 사용되는 부피리메이트(bupirimate), 카펜트라존에틸(carfentrazone-ethyl), 에티리몰(ethirimol), 피리오페논(pyriofenone)의 개정된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식품 안전 당국은 다음 식품품목에 대해 부피리메이트 및 에티리몰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을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대 잔류 허용 기준 강화 대상 품목	
부피리메이트	에티리몰
딸기, 블랙베리, 듀베리, 건포도, 구스베리,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및 애호박	사과, 배, 살구, 복숭아, 블랙베리, 듀베리,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오이, 작은 오이 및 애호박

각 성분의 품목별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은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0.358.01.0030.01.ENG&toc=OJ%3AL%3A2020%3A358%3ATOC

유럽의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수입한 한국의 관련 주요 식품 품목은 과일·채소·견과류의 가공품, 채소(신선, 냉장, 건조) 및 커피·차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식품 품목의 부피리메이트, 카펜트리존에틸, 에티리몰, 피리오페논의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을 확인하여 수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①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2110&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2&srchWord=eu&page=1
②http://data.europa.eu/eli/reg/2020/1566/oj

영국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새로운 지리적 표시제 발표 (10월 22일)



DEFRA는 영국의 식품과 음료를 보호하여 전통 음식의 명맥을 잇고, 영국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과 로고를 제정하는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리적 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s)는 영국 전역의 전통적인 생산물, 예를 들어 스카치 위스키나 웨일스 양고기, 코티쉬 클로티드 크림 같은 상품의 정통성과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영국의 지리적 표시 제는 기존의 EU 표시 제를 대체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교체가 시작될 것입니다.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영국의 식품, 음료, GI 식품 생산자들은 2024년 1월 까지 새로운 UK GI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GI 로고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❶원산지명칭보호(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❷지리적표시보호(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❸전통특산품보호(TSG,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

특히, EU 통합 규정이 적용되었던 원산지 표시 방식 등 표시 항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영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2021년부터 변경된 식품 표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①http://www.gov.uk/government/news/new-rules-and-logos-to-protect-british-food-and-drink
②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2161&menu_dept2=35&menu_dept3=75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MHLW), 식품첨가물 목록 중 9종 최종 삭제 발표 (10월 20일)

MHLW는 2020년 10월부로 식품첨가물 목록 수정안에 포함된 9개 식품첨가물의 삭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9개 식품첨가물이나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이 더 이상 유통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판매, 생산, 수입, 가공, 사용, 저장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일본이 삭제를 발표한 9종의 식품첨가물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타콘산(Itaconic acid), 피쉬 스케일 호일(Fish scale foil), 코오루 색소(Kooroo colour), 향신료 추출물(Spice extracts), 뼈 탄소(Bone carbon black), 시아 견과의 색소(Shea nut colour), 페리틴(Ferritin), 은행나무·헤고나무 추출물(Hego-ginko leaf extract), 레반(Levan)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최종안을 통해 변경된 식품첨가물 목록을 숙지하여 수출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①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2066&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EC%9D%BC%EB%B3%B8&page=1
②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9/SPS/JPN/19_1263_00_e.pdf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식용 식물성 유지의 영양기능 표시 조항 발표 (10월 20일)

FSSAI는 인도 내 식물성 유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식물성 유지의 영양성분에 대한 영양기능 표시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을 통해 인도 내 식물성 유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영양성분의 제품별 영양기능 표기 방식을 따라야하는 식용 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코넛유, 옥수수유, 목화씨유, 땅콩유, 아마 씨유, 겨자/유채 씨유, 겨자유, 올리브유, 잇꽃유, 팜 핵유(palm kernel oil), 팜 올레인유, 쌀겨유, 참깨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등

그리고 각 유지별 주요 영양성분에 따른 제품별 영양기능 표기 방식 중 땅콩유의 예는 다음과 같고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땅콩유의 주요 영양성분: 단불포화 지방산, 오메가-6, 토코페롤
* 땅콩유의 영양기능 표기 방식: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단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6, 토코페롤 함유

▸https://www.fssai.gov.in/upload/media/FSSAI_News_Oil_FNB_21_10_2020.pdf

식품 사업자는 영양성분의 의도나 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FSSAI가 명시한 영양성분 표기 방식과 같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식품 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까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①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2065&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EC%9D%B8%EB%8F%84&page=1
②https://www.fssai.gov.in/upload/media/FSSAI_News_Oil_FNB_21_10_2020.pdf

러시아



*출처

①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2082&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EB%9F%AC%EC%8B%9C%EC%95%84&pag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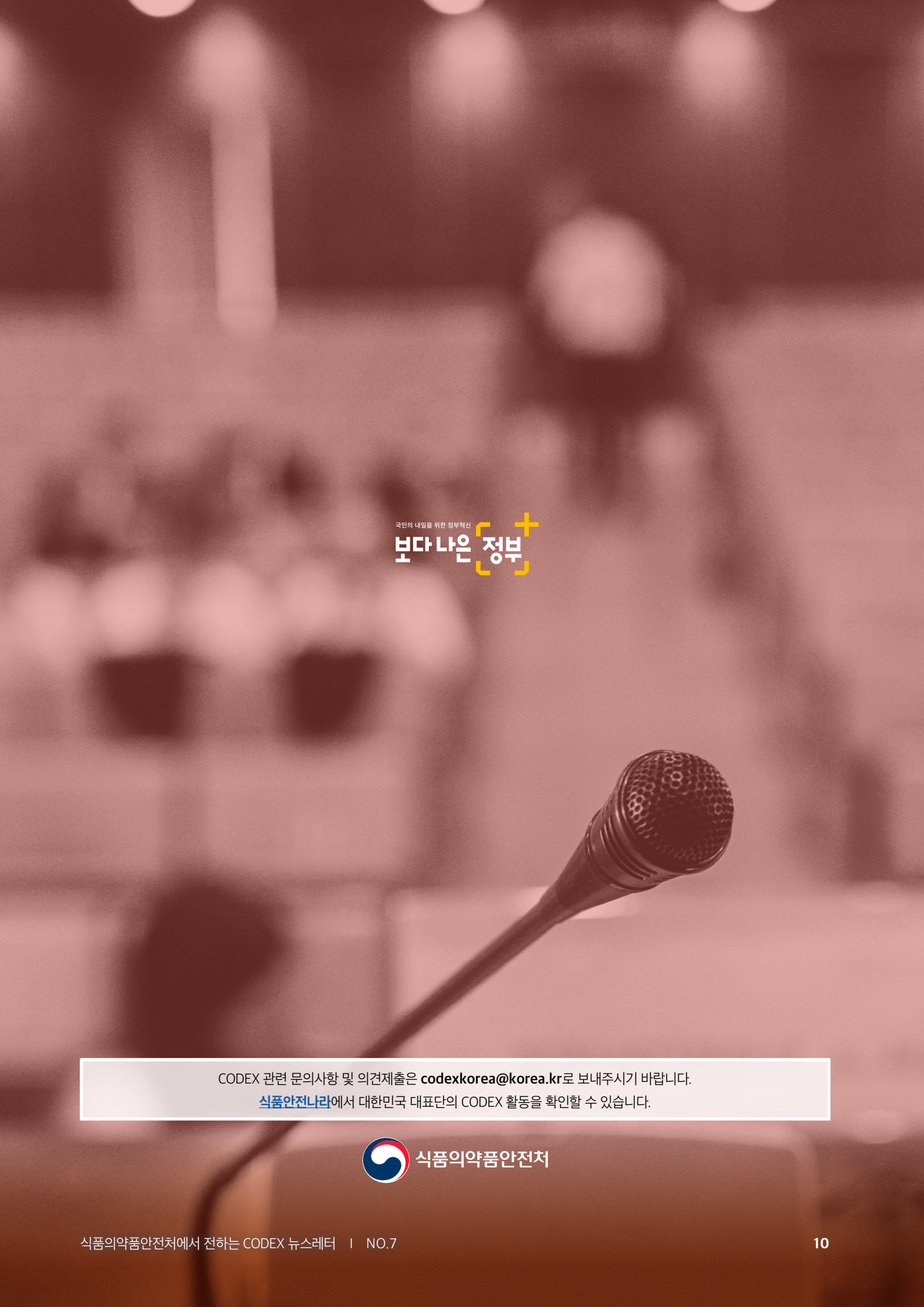
러시아 산업통상부, 맥주에 '표시 제도' 적용 가시화 (9월 3일)

러시아 산업통산부는 불법유통제품의 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전체 단계의 추적이 가능한 '표시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표시 코드에는 제품 이름 및 구성, 무게 또는 치수, 저장 방법 및 유통기한, 생산자 이름 및 주소, 배치 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들은 위조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라벨링 제도'는 모피, 의약품, 신발 등에 적용 중이지만, 앞으로 맥주와 저알콜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맥주는 2021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다른 주류제품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통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가짜제품의 생산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ODEX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은 **codexkorea@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의 CODEX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